2022년도 (재)인천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2년 2월 14일 ~ 2월 18일까지 (5일간) (재)인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18건(본처분 17건, 현지처분 1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에 발굴한 수범사례에 대하여 산하 전 기관에 전파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 감사결과 내역

총괄현황			처 분 현 황							
			처분종류(건)				재정상조치(건/천원)			신분상 조치(명)
계	본처분	현지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통보	계	추징·회수	환급·감액	훈계
18	17	1	17	2	11	4	1/309	1/309	-	4

2022년도 (재)인천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수범사례】

수범사례 1

사회적 가치 실현 체계 구축

○ 문화재단 사업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 추진체계 구축으로 재단의 책임경영 이행 및 조직 경영시스템 개선

□ 현 황

○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대응과 실천 요구 강화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증대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시 '기관 설립목적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 창출수준'에 대한 평가 강화

□ 문제점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내부 관리체계 및 관리계획 부재

-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부 인식 부재
- 사회적 가치 추진계획과 실행, 환류 활동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어려움

□ 개선방안

○ '사회적 가치 실현' 에 대한 체계 재정비로 조직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 내부 인식개선→ 전담기구설치→전략체계 재정립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범 사업 추진

- 재단 창립기념일과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 이행에 대한 내외부 이슈 강화

○ 사회적 가치 창출 요구에 부합하는 다각적 경영혁신

□ 개선실적

○ 사회적 가치 실현 인식 개선

- 내부 직원의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 조사 및 진단으로 재단의 활동 현황, 사회적 가치 항목별 인식과 중요도 등을 조사하여 관련 계획에 반영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 '사회적 가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영역별 혁신과제 발굴

○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체계 정립 : 4대 핵심가치 및 14개 중점과제 설정

- 책임경영, 혁신경영, 지역상생, 가치확산 4대 가치를 설정하여 추진전략과 세부추진과제 설정

○ 재단 사업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시범사업 추진

- 시작장애인 대상 점자 홍보물 제작 배포로 장애인 접근성 제고 및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환경 캠페인을 재단 창립기념일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

□ 추진실적

○ 지원사업 신청·교부·정산 전 과정의 온라인 시스템화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전면 도입을 통해 현장 예술인의 행정 부담 해소 및 사업 관련 데이터 관리의 체계성과 정확성 확보
-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지원 영역의 데이터 기반 사업운영 체계 마련과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현장 대응 수행

- 정부방역지침에 따른 유동적인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예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사업 관련 지침 사전 수립
-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예술현장이 다변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 표현 방식을 사업 내 적극 지원 도입
- 인천형예술인지원사업의 언택트형 창작작업 지원 및 공연분야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실행

□ 기대효과

○ 지원사업 수행 예술인·단체를 포함해 데이터에 기반을 둔 중장기적인 지원 사업 중장기적 로드맵 구축

○ 데이터 분석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 내 예술 현장의 사각지대 발굴 및 신규 사업 개발

○ 다변화된 예술 창작 환경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매체간의 융복합 및 성장 지원

○ 온라인, 비대면, 무관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창작발표 수행을 통해 예술가 스스로의 새로운 창작활동 영역 확대

수범사례 2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인천형예술인지원사업

○ 지원사업 신청・교부・정산의 시스템화 확립
○ 지원사업 DB구성을 통한 데이터 기반 지원사업 운영체계 수립
○ 코로나현황 관련 언택트형 지원사업을 통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수행

□ 사업개요

○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 인천 연고 전문예술인・단체의 영역(장르)별 예술창작활동 지원
- 총 예산 금1,510,000천원 / 145건 지원 선정

○ 인천형예술인지원사업
- 인천 연고 전문예술인・단체의 창작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창작활동지원
- 총 예산 1,160,000천원 / 79건 지원 선정

□ 추진실적

○ 지원사업 신청・교부・정산 전 과정의 온라인 시스템화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전면 도입을 통해 현장 예술인의 행정 부담 해소 및 사업 관련 데이터 관리의 체계성과 정확성 확보
-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지원 영역의 데이터 기반 사업운영 체계 마련과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현장 대응 수행
- 정부방역지침에 따른 유동적인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예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사업 관련 지침 사전 수립
-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예술현장이 다변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 표현 방식을 사업 내 적극 지원 도입
- 인천형예술인지원사업의 언택트형 창작작업 지원 및 공연분야 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실행

□ 기대효과

- ❍ 지원사업 수행 예술인·단체를 포함해 데이터에 기반을 둔 중장기적인 지원사업 중장기적 로드맵 구축
- ❍ 데이터 분석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 내 예술 현장의 사각지대 발굴 및 신규 사업 개발
- ❍ 다변화된 예술 창작 환경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매체간의 융복합 및 성장 지원
- ❍ 온라인, 비대면, 무관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창작발표 수행을 통해 예술가 스스로의 새로운 창작활동 영역 확대

2022년도 (재)인천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인 천 광 역 시

주 의(훈계) 요 구

제　　목 **▣▣▣▣▣▣ 공모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재)인천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 인천광역시 본예산에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추진되었으며, 인천지역의 문화예술 법인, 단체, 개인이 공연, 전시, 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위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별로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이다.

[표1] ▣▣▣▣▣▣ 지원사업 현황

(단위 : 건, 천원)

계		2020년		2021년		비고
건수	지원금액	건수	지원금액	건수	지원금액	
60	568,000	32	284,000	28	284,000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인천광역시 □□□□과에서는 본 출연금이 교부 목적 및 승인된 예산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 내용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출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였다.

1. 사업 추진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및 증명서류 미흡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⑩ 예산 집행절차 준수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등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등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고,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2조에는 일상경비등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67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지침, 해석 등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제13조 및 제14조에는 지원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지원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에서는 2020년도에 총 32건의 공모사업자를 대상으로 '□□□□□□□ 공모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가 포함된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표2]와 같이 '◎◎◎◎ ◎◎◎◎' 등 11개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물품 제작을 위한 계약서 또는 납품서 등 집행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없이 계좌이체증 및 세금계산서 등 간단한 지출서류만 첨부하였다. 특히, '☆☆☆☆ ☆☆☆'는 영상을 제작하였으나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의 집행증명서류 없이 예금이체증만으로 지출하였으며, '♤♤♤ ♤♤ ♤♤♤♤' 등은 공연에 참가한 출연자에게 공연 참가에 대한 청구서를 징구하지 않고 공연료를 집행하는 등 증명서류가 미흡하였다.

이와 같이 인천문화재단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적절한 집행을 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했음에도 사업 집행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산내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정산을 완료 처리하였다.

2. 공연 계약 미체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로 정의하고 있으며,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르면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 및 계약 기간,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의2에서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계약서 작성을 위반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의 ▣▣▣▣▣▣▣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기획업자(예술인, 예술단체)가 프리랜서 예술인 등과 함께 공연, 전시, 교육 등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예술인과 계약 금액 및 계약 기간, 과업 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 등 9개 사업은 [표3]에서와 같이 공연에 참여하는 예술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추진하였다.

[표3] 공연예술출연 계약서 미작성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주체	공연예술출연 계약서	
			작성대상	작성여부
1	♤♤♤ ♤♤ ♤♤♤♤	-	13명	미작성
2	**** ****	-	5명	미작성
3	$$$$ $$$$	-	1명	미작성
4	◐◐◐◐ ◐◐◐◐	-	10명	미작성
5	♣♣♣♣ ♣♣♣♣	-	2명	미작성
6	♨♨♨♨ ♨♨♨♨	-	1명	미작성
7	◑◑◑◑ ◑◑◑◑	-	22명	미작성
8	●●●● ●●●●	-	4명	미작성
9	▲▲▲▲ ▲▲▲▲	-	11명	미작성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사업비 정산 지연 및 공모사업 제외자 재선정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는 지원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지원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5조에는 지원사업자가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원사업자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2020년 ▣▣▣▣▣▣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및 공고계획 보고」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내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를 완료하여야 하고, 인천문화재단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 중 공고일까지 성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은 지원신청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도에 추진한 ▣▣▣▣▣▣ 지원사업 총 32개 사업 중 30개 사업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졌으나, '★★★★ ★★★★ ★★★★★★★(사업주체 : ▦▦▦▦ ▦▦▦▦)' 등 2개 사업은 각각 99일 및 244일 기간 동안 정산이 지연되었으며, 인천문화재단 담당자는 정산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게 정산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2020년 추진한 사업에 대해 정산서를 지연 제출한 '▨▨▨▨ ▨▨▨▨▨' 이 "ΣΣΣΣ ΣΣΣΣ ΣΣΣΣΣΣΣΣ'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인천문화재단에서는 해당 단체가 2020년도에 기한 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2021년 ▣▣▣▣▣▣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표4] 사업비 정산 지연 및 공모사업 재선정 내역

사업주체	사업명	사업기간	정산일	정산 지연일	비고
◓◓◓◓◓	★★★★ ★★★★	2020.7.8. ~8.15	2020.12.24.	99일	2021년 ▣▣▣▣▣ 지원사업 재선정
◆◆◆◆◆◆	ΣΣΣΣ ΣΣΣΣ	2020.6.1.	2021.3.3.	244일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주의) ① 보조사업자가 출연금을 교부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아래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재)인천문화재단 ◇◇◇◇부 ÅÅÅ

인 천 광 역 시

주 의·개 선 요 구

제　　목 **대관신청서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규정 정비 소홀**

기 관 명 (재)인천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 @ @ @ @ @ @ @, ▣▣▣▣▣▣▣

내　　용

1. 대관신청서 관리 소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 @ @ @ @ @ @ @ 운영규칙」제8조 <별지 제1호> @ @ @ @ @ @ @ 입주신청서와「인천문화재단 ◉◉◉◉ 대관규칙」제5조 <별지 제1호> ◉◉◉◉ 대관신청서 및 <별지 제1호의2> 대관변경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 @ @ @ @ @ @ 대관 신청 시 [표1]에서와 같이 대관을 신청한 자가 대관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인천문화재단에서는 각종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표1] 대관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현황

연번	시설명	관련공문	신청인
1	@@@@@@@	대관신청 및 검토보고, @@@-242(2019.1.23.)	▤▤▤
2		대관신청 및 검토보고, @@@-220(2019.3.7.)	▨▨▨
3		대관신청 및 검토보고, @@@-720(2019.6.19.)	▩▩▩
4		대관신청 및 검토보고, @@@-87(2019.1.28.)	▦▦▦
5		대관신청 및 검토보고, @@@-1989(2020.11.11.)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미징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서는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공동이용의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제28조 제1항에는 이용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공동 이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에서는 [표2]에서와 같이 ▣▣▣▣▣▣▣ 대관 신청시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다.

[표2]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미징구 현황

연번	시설명	관련공문	신청인
1	▣▣▣▣▣▣▣	대관신청 접수 보고[▣▣-517(2021.6.11.)]	℃℃℃℃
2		대관신청 접수 보고[▣▣-517(2021.6.15.)]	￥￥￥￥
3		대관신청 접수 보고[▣▣-517(2021.7.2.)]	∂∂∂∂
4		대관신청 접수 보고[▣▣-517(2021.7.2.)]	▥▥▥
5		대관신청 접수 보고[▣▣-517(2021.7.29.)]	☏☏☏
6		대관신청 접수 보고[▣▣-517(2021.8.4.)]	♧♧♧

7	▣▣▣▣▣▣▣	대관신청 접수 보고[▣▣-517(2021.8.6.)]	◎◎◎◎
8		대관신청 접수 보고[▣▣-517(2021.8.19.)]	◆◆◆◆
9		대관신청 접수 보고[▣▣-517(2021.9.10.)]	■■■■
10		대관신청 접수 보고[▣▣-517(2021.9.10.)]	▲▲▲▲
11		대관신청 접수 보고[▣▣-517(2021.9.10.)]	▼▼▼▼
12		대관신청 접수 보고[▣▣-517(2021.9.10.)]	〓〓〓〓
13		대관신청 접수 보고[▣▣-517(2021.9.15.)]	∀∀∀∀
14		대관신청 접수 보고[▣▣-517(2021.10.8.)]	∃∃∃∃
15		대관신청 접수 보고[▣▣-517(2021.10.27.)]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개인정보보호 운영 규정 정비 소홀 및 개인정보 보호 계획 등 미수립

「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천문화재단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문화재단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지정[1]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다르게 지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책에 맞게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천문화재단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지정, 인천문화재단 ♤♤♤-1255(2021.6.25.) : ♡♡♡♡의 담당부서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으로 지정

4. 대관신청서 및 시설 사용 서약서 서명 누락

인천문화재단에서는「인천문화재단 ◎◎◎◎◎◎◎ 대관규칙」등 관련 규칙에 따라 ◎◎◎◎◎◎◎, ◆◆◆◆, △△△△△△△, ◔◔◔◔◔◔, ▣▣▣▣▣▣▣▣ 등의 시설에 대해 대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등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를 비롯한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에서는 [표3]에서와 같이 시설 등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관신청서를 징구하면서 대관신청서와 시설 사용 서약서에 개인 서명을 누락하였다.

[표3] 대관신청서 및 시설 사용 서약서 서명 누락

연번	시설명	관련공문	신청인	대관신청서	시설 사용서약서
1	◎◎◎◎◎◎◎	대관신청 접수 및 검토보고 [◎◎◎◎-67(2019.1.23.)]	㉠㉠㉠	서명누락	-
2		대관신청 접수 및 검토보고 [◎◎◎◎-87(2019.1.28.)]	㉿㉿㉿	서명누락	-
3		대관신청 접수 및 검토보고 [◎◎◎◎-616(2019.6.19.)]	☒☒☒	서명누락	-
4		대관신청 접수 및 검토보고 [◎◎◎◎-1251(2019.9.5.)]	®®®	서명누락	서명누락
5		대관신청 접수 및 검토보고 [◎◎◎◎-1612(2019.10.22.)]	㉿㉿㉿	서명누락	-
6		대관신청 접수 및 검토보고 [◎◎◎◎-1725(2019.11.12.)]	☼☼☼	서명누락	서명누락
7		대관신청 및 검토보고 [◎◎◎◎-895(2020.7.6.)]	☙☙☙	서명누락	-
8		대관신청 접수 및 검토보고 [◎◎◎◎-1251(2020.11.20.)]	☮☮☮	서명누락	서명누락
9		대관신청 접수 및 검토보고 [◎◎◎◎-566(2021.3.8.)]	✊✊✊	서명누락	서명누락
10		대관신청 접수 및 검토보고 [◎◎◎◎-566(2021.3.8.)]	☑☑☑	서명누락	서명누락

11	◎◎◎◎◎◎◎	대관신청 접수 및 검토보고 [◎◎◎◎-1750(2021.7.1.)]	㊉㊉㊉	서명누락	서명누락
12		대관신청 접수 및 검토보고 [◎◎◎◎-1950(2021.7.20.)]	⓫⓫⓫	서명누락	서명누락
13		대관신청 접수 및 검토보고 [◎◎◎◎-2476(2021.9.6.)]	◀◀◀	서명누락	서명누락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주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및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여 주시고 대관신청서가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위원회 관리 및 운영 소홀**

기 관 명 (재)인천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1. 인천문화재단 내부 규정에 '◆◆◆◆◆◆◆'에 관한 사항 미반영

「지방자치법」 제1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천광역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인천문화재단 정관」제20조 및 제21조에는 재단의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재단 내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에서는 [표1]에서와 같이 1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 등 11개 위원회는 인천문화재단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문화재단 ◆◆◆◆◆◆◆는 인천문화재단 ⓘⓘⓘⓘⓘ에서 인천문화재단의 주요 정책연구 및 의제 개발 등에 지역문화예술인과의 의제수렴이나 소통창구로 ◆◆◆◆◆◆◆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계획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인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제10조에는 ◈◈◈◈◈◈◈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인천문화재단 ▽▽▽▽▽의 업무분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인천문화재단 ◈◈◈◈◈◈◈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에 부합하며, 「인천문화재단 정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문화재단 ◈◈◈◈◈◈◈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천문화재단의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인천문화재단 내부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문화재단 ◈◈◈◈◈◈◈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천문화재단의 별도 규칙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 외부 전문가 위촉 미이행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중앙정부 및 인천시, 기타 기관의 위탁사업을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하거나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문화재단 수탁 및 대행사업 운영규정」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수탁 및 대행사업, 재용역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위원은 본부장급 부서장,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 2~3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에서는 [표2]에서와 같이 ◕◕◕◕◕◕◕◕◕를 외부 전문가 없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내부 직원 7명으로만 구성 운영하고 있어, 위원은 본부장급 부서장 및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 2~3인으로 구성한다는 「인천문화재단 수탁 및 대행사업 운영규정」의 위원 구성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표2] '인천문화재단 ◕◕◕◕◕◕◕◕◕' 구성현황

(2022.2.18. 현재)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인천문화재단	◇◇◇◇	⬦⬦⬦	위원장
2		□□□□□	◆◆◆	위원
3		▬▬▬▬▬▬	◆◆◆	위원
4		▣▣▣▣▣▣	◆◆◆	위원
5		☆☆☆☆☆☆☆☆☆☆☆☆☆	▣▣▣	위원
6		◎◎◎◎◎◎◎◎◎	▣▣▣	위원
7		◐◐◐◐◐◐	◆◆◆	간사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개선] '인천문화재단 ◈◈◈◈◈◈◈'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천문화재단의 규칙에 반영하여 주시고, ◕◕◕◕◕◕◕◕◕ 운영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 ▽▽▽▽▽, ◎◎◎◎◎◎◎◎, ⊗⊗⊗⊗⊗⊗⊗, ▢▢▢▢, ◇◇◇◇◇◇◇

내　　용

1. 세출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예산은 세입 및 세출 예산 과목에 맞게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은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목으로,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등은 공공요금 및 제세 목으로, 기본사무용경비 및 사무용 각종 소모품비나 방역용 약품구입비, 소모성 소규모 비품구입비와 업무용 전산 S/W구입비는 소모품비 목으로, 건물・기계장치 및 각종 장비 수선유지비 및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선유지비로 편성・지출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는 지급임차료로, 청사청소용역 및 경비용역비, 방역소독비등은 지급수수료로, 기관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회의운영비로,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원 이상인 공구, 기구 및 비품구입비는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편성・지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표1]과 같이 ◇◇◇◇ ◇◇◇◇ 등 262건에 대하여 세출예산 과목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1]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건/원)

구분	집행내역	집행건수	집행금액	비고
합 계		262	109,985,530	
2019년	◇◇◇◇ ◇◇◇◇ 외	28	5,595,160	
2020년	◇◇◇◇ ◇◇◇◇ 외	161	59,375,790	
2021년	◇◇◇◇ ◇◇◇◇ 외	73	45,014,58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2]에 의하며, 각 회계 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르면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를 지출하면서 [표2]와 같이 2년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재정보증보험 가입 현황

(단위:원)

구분	대상자	보험기간	보증가입액	보험료	비고
합 계				836,740	
2020년	대표이사 외 10개 직위	2020.01.01~2021.12.31	220,000,000	400,180	
2022년	대표이사 외 12개 직위	2022.01.01~2023.12.31	240,000,000	436,56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세출예산과목 과목해소’에 따르면 행사·홍보비에

2)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 ~ 12월 31일)을 단위로 함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하며「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행사·홍보비는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과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무료 봉사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 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고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표3]과 같이 행사참여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3] 행사운영비 부적정 집행 내역

(단위:원)

진행일	행사명	집행내역	지출처	집행액	비고
2019.09.29	⬆⬆⬆⬆ ⬆⬆⬆⬆	㊍㊍㊍㊍ ㊍㊍㊍㊍	═══	386,1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주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주 의 요 구

제　　목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인천문화재단 보수 및 수당 지급 규칙」[별표3] 기타수당지급 기준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이며, 부양가족 요건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이상의 직계존속[3](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4](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에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가족수당은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에 따라 지급 또는 소멸되며, 사유에 따라 사유발생 또는 소멸 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또는

3)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4)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에서는 [표1]과 같이 자녀의 연령이 초과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였다.

[표1] 가족수당 지급 소멸 사유 발생자에 대한 수당 지급

(단위:원)

신청자	가족수당 대상자	지급소멸사유	오지급액	비고
▥▥▥	자녀(◔◔◔)	만 19세 이상 (2000.00.00.)	20,000	2019년 12월분 지급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2]와 같이 부양가족 세대 합가 및 연령도달에 따른 소급 신청에 대하여 소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였다.

[표2] 가족수당 소급적용 부적정

(단위:원)

신청자	가족수당 대상자	지급사유발생일	오지급액	비고
합 계			289,110	
㉿㉿㉿	부(⊠⊠⊠), 모(▽▽▽)	부양가족 등록 세대합가 (2000.00.00.)	74,830	2021년 10월분부터 소급지급
㊞㊞㊞	부(▢▢▢)	부양가족 연령도달 (2000.00.00.)	214,280	2021년 2월분부터 소급지급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시정] 오지급된 가족수당 309,110원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시고, 향후 유사한 지적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등 관계 규정 및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을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 관 경 고

제　　목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1. 업무추진비 연간집행계획 미수립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연간 계획을 한 번도 수립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다.

2. 업무추진비 공휴일 및 주말 사용 부적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및 업무를 위해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는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품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표1]과 같이 업무추진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

[표1] 업무추진비 주말 집행 현황

(단위 : 원)

사용일자	사용자	집행내역	금액
합 계			2,513,800
2019.10.09.(공휴일)	-	-	23,000
2019.11.09.(토)	-	-	125,000
2019.11.23.(토)	-	-	454,000
2020.01.11.(토)	-	-	55,000
2020.05.01.(공휴일)	-	-	172,000
2020.05.01.(공휴일)	-	-	40,000
2021.01.31.(일)	-	-	65,000
2021.02.06.(토)	-	-	151,000
2021.02.11.(공휴일)	-	-	92,000
2021.03.13.(토)	-	-	17,600
2021.05.08.(토)	-	-	78,000
2021.05.22.(토)	-	-	120,000
2021.05.23.(일)	-	-	200,000
2021.10.03.(일)	-	-	19,500
2021.10.23.(토)	-	-	55,000
2021.10.24.(일)	-	-	11,200
2021.10.30.(토)	-	-	58,000
2021.11.13.(토)	-	-	99,000
2021.11.13.(토)	-	-	19,500
2021.11.14.(일)	-	-	34,000
2021.11.28.(일)	-	-	270,000
2021.12.11.(토)	-	-	175,000
2021.12.11.(토)	-	-	180,0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경조사비) 증빙서류 미첨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며,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축의·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표2]와 같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83건을 지출하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경조사에 대한 명확한 자료 및 화분, 화환 등의 인수 내역 등 일체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였다.

[표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조사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합 계		5,930,000	
2019	-	330,000	
2020	-	1,520,000	
2021	-	4,080,0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제3조 관련)> 중 8. 직무수행 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에 따르면 축·부의금품의 지급 대상 범위는 결혼 또는 사망이며, 업무 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업무 연관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유관기관[5]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고, 소속 상근직원[6]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소속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경조사비 대상이 아닌 자에게 [표3]과 같이 경조사비를 지급하였다.

[표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집행일자	집행내역	지출금액	비고
합 계		1,700,000	
2019.09.30.	-	50,000	

5)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함

6) 상근직원은 관련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음

2020.04.21.	-	60,000	
2020.06.16.	-	60,000	
2020.08.18.	-	60,000	
2020.08.18.	-	60,000	
2020.11.02.	-	60,000	
2021.01.05.	-	60,000	
2021.01.09.	-	60,000	
2021.01.11.	-	60,000	
2021.02.03.	-	60,000	
2021.03.25.	-	60,000	
2021.03.29.	-	60,000	
2021.04.03.	-	60,000	
2021.04.03.	-	60,000	
2021.05.10.	-	60,000	
2021.06.22.	-	60,000	
2021.08.09.	-	60,000	
2021.09.13.	-	60,000	
2021.09.27.	-	90,000	
2021.10.05.	-	90,000	
2021.10.05.	-	90,000	
2021.10.20.	-	90,000	
2021.10.20.	-	90,000	
2021.10.28.	-	90,000	
2021.11.08.	-	90,0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기관운영업무추진비(물품구입)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소속 상근 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자에게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나, 조문별 해설에 의하면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자에 대한 감사패 등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로는 격려금품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표4]와 같이 정년 퇴임자에 대한 감사패를 일반운영비가 아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였다.

[표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물품구입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집행일자	집행내역	금액	비고
합 계		690,000	
2020.06.09.	-	450,000	
2021.06.18.	-	240,0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에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은 자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다 명시되어 있는데 재단에서는 상근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표5]와 같이 집행하였다.

[표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집행일자	집행내역	대상자	금액	비고
합 계			932,000	
2020.01.22.	-	-	149,000	
2020.09.24.	-	-	199,000	
2021.02.03.	-	-	247,000	
2021.09.13.	-	-	337,0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동호인 취미클럽 활동, 체육대회 참가자 격려, 생일 기념품, 불우 직원 격려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다.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생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로 집행 가능하나, 재단에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표6]과 같이 설, 추석 선물을 구입하였다.

[표6]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설, 추석 선물 구입 현황

(단위 : 원)

구분	지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17,610,000	
2019	-	3,030,000	
2020	-	2,700,000	
	-	3,960,000	
2021	-	3,760,000	
	-	4,160,0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기관경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 ⊜⊜⊜⊜⊜, ◔◔◔◔◔◔◔◔, ◘◘◘◘◘◘◘, ▣▣▣▣▣▣▣▣, ◆◆◆◆◆◆◆◆◆

내　　용

1. 물품 구매 예산 부적정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자산취득비는 출자·출연기관 청사 및 관사 운영물 취득비, 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등으로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원 이상인 공구, 기구 및 비품구입비[7] 계상 예산과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사를 운영하기 위한 내용연수 5년 이상이거나 품목별 취득원가가 100만원 이상인 비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편성·지출하여야 하나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표1]과 같이 자산취득비 과목이 아닌 예산과목에서 물품을 구입·지출하였다.

[표1] 타 예산과목에서 물품구입 현황

(단위:원/대,개)

구입날짜	예산과목	집행내역	구입내역	구입금액
합 계				49,431,790
2019/12/17	소모품비	-	-	9,970,000
2019/12/17	소모품비	-	-	7,200,000
2019/12/18	소모품비	-	-	3,860,730

7) 단, 내용년수 5년미만이고, 품목별 개별취득원가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수의적 지출에 사무관리비에 계상

2019/12/18	소모품비	-	-	1,126,040
2019/12/18	소모품비	-	-	2,449,150
2019/12/26	소모품비	-	-	249,940
2019/12/27	소모품비	-	-	1,875,000
2019/12/03	소모품비	-	-	3,000,000
2019/09/06	수선 유지비	-	-	990,000
2020/01/20	소모품비	-	-	916,000
2020/08/27	소모품비	-	-	1,683,000
2020/10/22	행사 운영비	-	-	1,274,760
2020/10/23	행사 운영비	-	-	550,000
2020/10/23	행사 운영비	-	-	678,000
2020/10/23	행사 운영비	-	-	1,177,700
2020/10/23	행사 운영비	-	-	215,970
2020/10/23	행사 운영비	-	-	1,190,000
2020/03/18	수선 유지비	-	-	5,000,000
2020/04/24	수선 유지비	-	-	1,327,120
2020/06/16	수선 유지비	-	-	1,958,000
2020/08/29	수선 유지비	-	-	183,980
2021/11/22	소모품비	-	-	535,000
2021/03/04	수선 유지비	-	-	1,936,400
2021/03/26	수선 유지비	-	-	25,000
2021/03/26	수선 유지비	-		60,0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취득 물품 비품 관리 대장 미등재

「인천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54조에 대표이사는 재단의 모든 재산과 물품을 각 호의 관계대장에 등록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58조에 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출납하고 비품출납부, 도서

출납대장, 소모품대장, 물품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2021년 9월까지 구입 물품 등록 이후 구입물품에 대하여 [표2]와 같이 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2] 구입물품 미등록 현황

(단위:원/대,개)

구입날짜	집행내역	구입내역	구입금액
합 계			24,997,510
2021/12/09	-	-	747,950
2021/12/13	-	-	4,061,810
2021/12/27	-	-	2,293,310
2021/12/27	-	-	482,590
2021/12/27	-	-	2,895,550
2021/12/27	-	-	1,006,400
2021/12/27	-	-	241,290
2021/11/22	-	-	535,000
2021/11/17	-	-	1,900,200
2021/11/17	-	-	1,986,510
2021/11/29	-	-	750,000
2021/11/29	-	-	3,550,000
2021/12/07	-	-	337,900
2021/12/08	-	-	209,000
2021/12/17	-	-	1,800,000
2021/12/17	-		2,200,0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불용품 처리 부적정

공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르면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또한「인천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59조에 물품관리관은 물품이 노후 또는 훼손되어 사용가치가 상실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 물품을 불용 결정하고 매각·폐기·증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품목, 수량, 처분방법, 처분사유 등을 담은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도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재단에서는 2019년도 7월에서 8월까지 정기 재물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 총 0,000개의 물품 중 000개의 불용물품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표3]과 같이 2020년 8월에 불용처리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정기 재물조사 용역 후 불용 물품에 대해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불용처분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매각 절차 진행 없이 모든 불용물품에 대하여 폐기 처분을 하였으며, 지급수수료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나 시설유지보수비로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집행하였다.

[표3] 불용품 처리 현황

(단위:원/개)

처리일	예산과목	내 용	수행업체	금액	불용대상	비고
2020.08.25	수선유지비 시설유지보수	불용물품 처리 비용 지급	◆◆◆◆	-	-	2019년도 재물조사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주의] ①「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지출하고, 취득 물품은 물품대장에 등재, 불용 물품은 불용 처분 하는 등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불용물품 처리 시 매각을 통하여 처리 될 수 있도록 불용품처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복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1. 유연근무자 복무에 관한 사항

「인천문화재단 복무규정」에 의하면 직원은 법령과 재단의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인천문화재단 근로시간 및 휴일 등의 변경에 관한 규칙」제4조(시차출퇴근제)[8]에 따르면 일반직 및 시설관리직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모든 유연근무자는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유연근무를 신청한 사람들은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하고, 복무담당자는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유연근무자들은 [표1]과 같이 출·퇴근 지문인식을 다수 누락하였다.

---

8) 일반직 및 시설관리직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담당하는 업무 특성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3.>
1. 8시 출근 17시 퇴근
2. 10시 출근 19시 퇴근

[표1] 유연근무제 실시 개인별 부적정 현황

(단위 : 회)

연도별	실시현황	시차근무제 근무시간	지문인식누락횟수		비고
			출근	퇴근	
합 계			449	2,900	
2019	▤▤▤ 등 8명	08:00~17:00	87	416	
2020	▥▥▥ 등 20명		214	1,370	
2021	▨▨▨ 등 21명		148	1,114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재택근무자 복무에 관한 사항

재단에서는 2020년 10월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 준수를 위하여 특별 복무지침을 수립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하였으며, 지침에 재택근무자들은 그룹웨어 메인화면에서 출근(09:00), 퇴근(18:00)을 등록하도록 명시하였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신청한 사람들은 그룹웨어 메인화면에서 출·퇴근을 등록하여야 하고, 복무담당자는 재택근무자들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단 재택근무자들은 [표2]와 같이 출·퇴근 등록을 다수 누락하였다.

[표2] 재택근무제 실시 개인별 부적정 현황

(단위 : 회)

연도별	실시현황	출·퇴근등록누락횟수		비고
		출근	퇴근	
합 계		23	120	
2020	▧▧▧ 등 13명	4	46	
2021	▦▦▦ 등 25명	19	74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주의] 유연근무자와 재택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과 교육 등을 통하여 출·퇴근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훈계) 요 구

제　　목 2019 인천문화재단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미이행

기 관 명 (재)인천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조례」, 「공무원여비규정」 등을 적용하여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인천문화재단 임·직원여비 지급규칙」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이 이와 상이하여, 2019년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종합감사 결과, [표1]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는 현지처분을 받았다.

[표1] 2019년 종합감사 시 현지조치 처분 내용

현 지 조 치 사 항
제목 : 여비 지급기준 부적정(개선)
1. 내　용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예규)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 같은 기준 ‘Ⅳ.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에 따르면 근무지외 국내출장시 지급되는 여비항목은 운임.숙박비.식비.일비로 하되 각 항목별 지급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인천문화재단 임.직원여비 지급규칙」 제8조에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로 출장할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0만원,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0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여비 지급기준을 운영 중에 있다.

2. 조치할 사항

(개선) 「인천문화재단 임.직원여비 지급규칙」의 제8조를 삭제하시기 바라며, 상위 규정 등 여비 지급기준에 맞게 관련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 여부 : 필요

그러나 재단에서는 2022년 2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주의] ① 2019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인천문화재단 임·직원여비 지급규칙」의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조례」,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래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재)인천문화재단 △△△△△ ▦ ▦ ▦

(재)인천문화재단 ◆◆◆◆◆ ▧ ▧ ▧

(재)인천문화재단 ◔◔◔◔◔ ▩ ▧ ▧

인 천 광 역 시

주 의 · 개 선 요 구

제　　목 선금지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 ◇◇◇◇◇, ▽▽▽▽▽

내　　용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에 따르면,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4. 채권 확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같은 예규 ‘제6장 제2절 5. 선금의 사용과 정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 청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조건으로 명시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선금 정산액[9]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천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67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지침, 해석 등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에서는 [붙임]과 같이 선금 지급 시 보증서 미징구 0건, 채권확보 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 미확보 00건, 규정에 맞지 않는 보증기간 00건, 사용내역서 미제출 00건 등 선금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9)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text{계약금액}}$$

[관계기관 의견]

재단에서는 선급금 미정산에 대해 「인천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 31조[10]에 따라 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의견에 대한 판단]

「인천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31조에 따르면, 계약에 의한 선금 및 여비, 발송비 등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비에 한하여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나 계약에 의한 선금급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2. 선금 지급대상 및 5. 선금의 사용과 정산'에 따르면, 대상범위는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하고,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임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31조 선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계약에 의한 선금급은 제외한다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다.

---

10) **제31조(선금급, 개산급)** ① 계약에 의한 선금 및 여비, 발송비 등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비에 한하여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나 계약에 의한 선금급은 제외한다.
③ 계약에 의한 선금급은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에 의한 선금급을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기성고와 지원금, 후원 등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주의] 선금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천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같은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10절 3. 하자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이하 “정기하자검사”라 한다)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이하 “하자만료검사”라 한다)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인천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67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지침, 해석 등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에서는 [붙임]과 같이 총 00건의 사업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적정 00건, 정기하자검사 미실시 0건, 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하자만료검사 실시 0건 등 하자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주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에 맞게 하자검사 업무를 적정하게 추진토록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 ⊠⊠⊠ ⊠⊠⊠ 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재)인천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

내　　용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웹·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공연, 전시, 행사 등 종합적인 문화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향유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 ⊠⊠⊠ ⊠⊠⊠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4개월간 추진하였다.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인천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67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지침, 해석 등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위 조항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의미는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고자 발주기관의 내부직원은 제안서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재단 내부직원 3명을 평가위원 예비명부에 포함하고 추첨을 통하여 평가위원 총 7명 중 1명을 재단 직원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직원의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4항에 따르면,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아울러 재단에서는 ⊠⊠⊠ ⊠⊠⊠ 사업 제안요청서에, 재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년 1회 이상 사업자를 교육한다고 되어 있으나 용역업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주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주 의 요 구

제　　목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표1]과 같이 재단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총 13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표1] 인천문화재단 운영 홈페이지 현황

순번	사이트 명	URL	최초 구축일	최근 개편일
1	인천문화재단	www.ifac.or.kr	-	-
2	인천문화예술정보 아이큐	iq.ifac.or.kr	-	-
3	인천아트플랫폼	inartplatform.kr	-	-
4	트라이볼	tribowl.kr	-	-
5	한국근대문학관	lit.ifac.or.kr	-	-
6	우리미술관	www.wooriart.co.kr	-	-
7	칠통마당	ifac.or.kr/7tong	-	-
8	생활문화온라인플랫폼	www.ilcp.or.kr	-	-
9	시작공간 일부	space1bu.ifac.or.kr	-	-
10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appci.ifac.or.kr	-	-
11	인천예술인지원센터	artist.ifac.or.kr	-	-
12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3point.ifac.or.kr	-	-
13	인천아트아카이브	www.inartarchive.kr	-	-

1. 웹접근성 지침 적용 미비

「인천문화재단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제3항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홈페이지 이용에 청소년,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접근을 위한 특별한 고려를 하여 이용자들에게 홈페이지 이용과 접근에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에 의하면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붙임1]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2015.3.31.)을 수립·배포함에 따라 웹 사이트 개발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는 웹콘텐츠를 제작하고,「국가정보화기본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화된 웹 접근성 부문의 표준으로 본 지침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에서 운영하는 13개 사이트를 웹 접근성 진단 도구(OpenWax)로 검사한 결과, [붙임2]와 같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지 아니한 항목들이 다수 발견되는 등 재단 홈페이지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홈페이지 관리 소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11]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1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인천문화재단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제6항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1항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8조(홈페이지 참여공간 운영)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공간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재단 홈페이지 메인 하단과 회원가입 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게시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수탁업체 정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근거’ 내 근거규정에 대한 현행화가 안되어 있고 그 간 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재단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 및 이용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추진하지 않았으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 및 교환을 위한 참여공간으로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나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글쓰기’ 버튼이 보이지 않는 등 홈페이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시정]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2015.3.31.)」에 따라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재단 관련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